

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다국어 생활상담, 생활한국어 교육과 법률, 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- 시설명 : 서울글로벌센터(생활지원)
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5층
 - 시설규모 : 738.45㎡(전용 426.26㎡)
 - 이용대상 : 외국인주민
- 나. 위탁내용
- 위탁기간 : 3년(2017.1.1.~2019.12.31.)

○ 위탁사무

-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상담
-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등
-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시설 및 물품관리 운영

○ 소요예산 : 1,180,498천원(2016년 기준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최초위탁 : 2008.1.1~2010.12.31(3년) (사)세계선린회
- 2차 재계약 : 2011.1.1~2013.12.31(3년) (사)세계선린회
- 3차 재계약 : 2014.1.1~2016.12.31(3년) (사)세계선린회

라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, 생활 한국어 교육 등 생활편의 제공과 법률, 노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-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(지원의 범위), 제20조(업무의 위탁)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센터운영팀 박종천(☎ 2075-4114)